

#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정지원 의원

#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정지원 의원(1인)

찬 성 자: 김낙관·김춘남·소진혁·양진오  
장미경 의원(5인)

## 1. 제안이유

에너지이용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 복지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3조)

나.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

다. 기능(안 제11조)

라.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안 제20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에너지법」 제7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2)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나. 부서검토: 전략산업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후변화”를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 및 기후변화”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에너지 복지”란 모든 구미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소외지역 등에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③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법」 제16조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④ “에너지 소외지역”이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과 농촌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을 말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모든 계층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 복지

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에너지 소외계층·소외지역 등 에너지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에너지 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냉·난방 연료 등 에너지 공급
2. 에너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4.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지원사업
5.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
6.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7.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u>기후변화</u>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원칙)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p> <p>1. ~ 7. (생략)</p> <p><u>&lt;신설&gt;</u></p> <p>8.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p>	<p>제1조(목적) ----- ----- ----- ----- ----- ----- ----- <u>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 및 기후변화</u> ----- ----- ----- ----- -----.</p> <p>제2조(기본원칙) -----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3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 제목</p>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신 설>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신 설>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에너지 복지”란 모든 구미 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소외지역 등에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③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법」 제16조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④ “에너지 소외지역”이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과 농촌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모든 계층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에너지 소외계층·소외지역 등 에너지 추진에 관한 사항

7. (생략)

③ ~ ⑤ (생략)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 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0조(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냉·난방 연료 등 에너지 공급

2. 에너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4.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지원사업

5.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

6.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7.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u>제20조</u> · <u>제21조</u> (생략)	<u>정하는 사업</u> <u>제21조</u> · <u>제22조</u>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	---

# 관계법령

## □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

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 65세 이상의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 마. (생략)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전략산업과

조 례 명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li><li>▪ 「에너지이용 합리화법」</li><l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li></ul></li></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의(안 제3조): 에너지 복지 개념을 조례에 반영</li><li>○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li><li>○ 기능(안 제11조): 구미시 에너지위원회 기능에 에너지 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li><li>○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안 제20조)</li></ul>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미시 에너지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li></ul>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대효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근거 마련</li><li>○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li><li>○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li></ul>	

# 구미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 제20조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 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팀 공업 8급 이태호(☎054-480-6196)